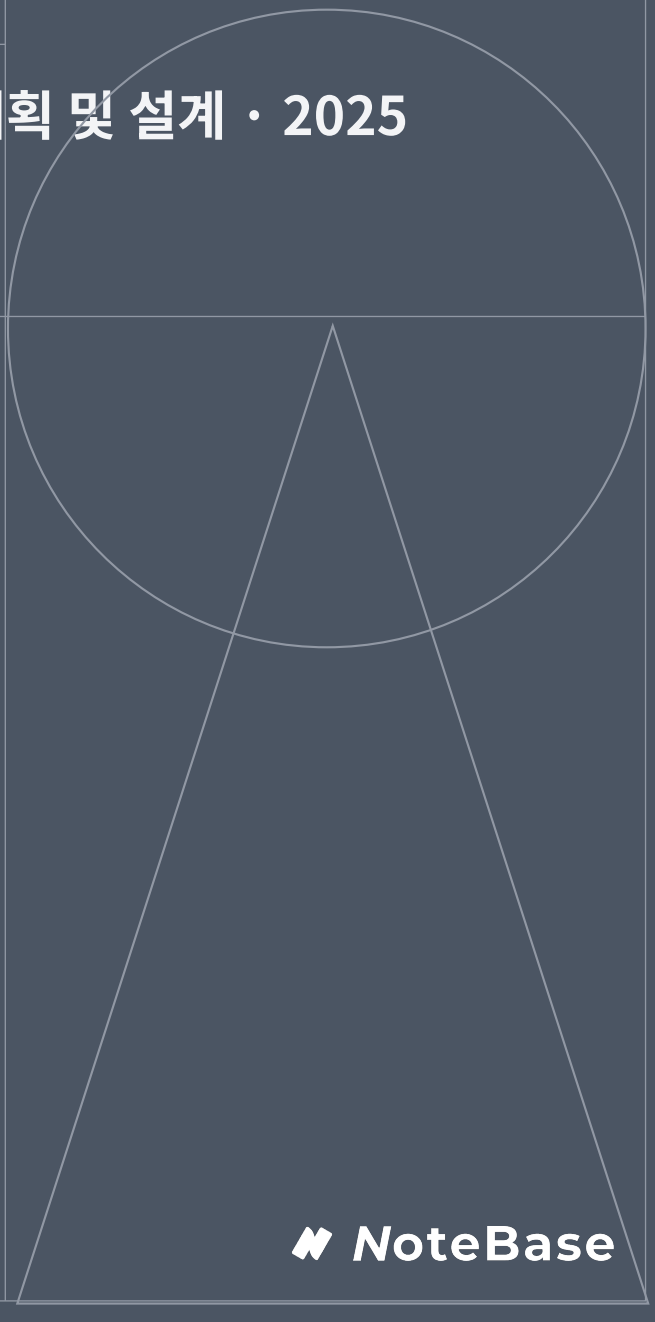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5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5

문 1. 「조경설계기준(2024)」상 인공토양에서의 조경용 식물 생존최소토심[cm]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잔디, 초화류 - 10

② 천근성 교목 - 30

③ 소관목 - 15

④ 심근성 교목 - 90

정답 1번

쟁점

「조경설계기준(2024)」(KDS 34 00 00)에서 정한 식물의 생존최소토심을,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경우의 값으로 정확히 짝짓는 문제이다. 같은 식물이라도 자연토양보다 인공토양일 때 더 얕은 토심이 허용되므로, 토양 종류를 혼동하면 자연토양 값으로 오답을 고르게 된다.

용어 풀이

생존최소토심: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흙 두께이다(이보다 더 깊은 생육최소토심은 정상적인 생장까지 보장하는 두께이다). 인공토양: 옥상·인공지반 등에서 하중을 줄이려고 쓰는 경량의 인공 배합토로, 보수력과 통기성이 좋아 자연토양보다 얕은 토심으로도 식물 생존이 가능하다. 천근성 교목: 뿌리가 얕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 심근성 교목: 곧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이다.

핵심 구분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잔디·초화류 10cm / 소관목 20cm / 대관목 30cm / 천근성 교목 40cm / 심근성 교목 60cm이다. 자연토양 생존최소토심은 이보다 깊어 잔디·초화류 15cm / 소관목 30cm / 대관목 45cm / 천근성 교목 60cm / 심근성 교목 90cm이다. 즉 '인공토양은 자연토양보다 얕다'가 원칙이고, 선지의 함정은 자연토양 값을 끼워 넣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잔디, 초화류 - 10 : O. 인공토양에서 잔디·초화류의 생존최소토심은 10cm로 정확히 일치한다.
② 천근성 교목 - 30 : X. '30' → 인공토양 천근성 교목은 40cm이다(30cm는 인공토양 대관목 값이다).
③ 소관목 - 15 : X. '15' → 인공토양 소관목은 20cm이다(15cm는 자연토양 잔디·초화류 값이다).
④ 심근성 교목 - 90 : X. '90' → 인공토양 심근성 교목은 60cm이다(90cm는 자연토양 심근성 교목의 생육최소토심에 해당하는 값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④를 고르는 것이다. 90cm는 자연토양 심근성 교목 값(생육최소토심)이라 익숙해서 맞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인공토양'을 묻고 있어 60cm가 맞다. ③의 15cm도 잔디·초화류의 자연토양 값을 소관목 자리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에서 '인공토양'인지 '자연토양'인지, '생존'인지 '생육'인지 두 가지를 확정한다. 그다음 인공토양 생존 기준선(10-20-30-40-60)을 떠올려 잔디·초화류부터 심근성 교목까지 순서대로 대입하면 한 선지만 일치한다. 자연토양 값(15-30-45-60-90)이 보이면 함정 선지로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인공토양 생존최소토심은 잔디·초화류 10, 소관목 20, 대관목 30, 천근성 교목 40, 심근성 교목 60으로 10cm씩 올라가는 등차로 외워 둔다. 자연토양은 잔디 15에서 시작해 15-30-45-60-90으로 15cm씩 올라간다.
'인공=10단위 시작, 자연=15단위 시작'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 기준이 다른 하나는?

① 소공원

② 묘지공원

③ 역사공원

④ 수변공원

정답 2번

쟁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 소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은 규모 기준이 '제한 없음'인 데 반해, 묘지공원만 유일하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최소 규모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규모 기준: 별표 3에서 각 공원 유형별로 정한 최소 면적 요건. '제한 없음'은 법령상 최소 면적 요건이 없음을 의미한다.

핵심 구분

규모 기준 없음(제한 없음): 소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 규모 기준 있음: 어린이공원(1, 500m^2 이상), 근린공원(유형별 1만~100만㎡ 이상), 묘지공원(10만㎡ 이상), 체육공원(1만㎡ 이상), 도시농업공원(1만㎡ 이상).

선지별 해설

① 소공원 — 별표 3에서 규모 기준 '제한 없음'. 나머지 ③④와 같은 계열이므로 오답.
② 묘지공원 —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라는 입지 기준과 함께 규모 기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명시되어 있다. 선지 중 유일하게 최소 규모 기준이 있으므로 정답.
③ 역사공원 — 별표 3에서 규모 기준 '제한 없음'. 오답.
④ 수변공원 — 입지 기준(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한 곳)은 있으나 규모 기준은 '제한 없음'. 오답.

오답 포인트

소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이 모두 '제한 없음'이라는 점에서 세 선지 중 어느 것이 답인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를 찾는 것이므로, 규모 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묘지공원(10만㎡ 이상)이 정답이다. 수변공원은 입지 기준(수변 접촉)은 있으나 규모 기준은 없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공원 종류별 규모 기준 문제가 나오면, 별표 3에서 '제한 없음'
그룹(소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과 '수치 기준 있음'
그룹(어린이공원·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을 먼저 나눈다. 문항이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을 섞어 제시하면 주제공원 중 유일하게 수치 기준이 있는 묘지공원(10만㎡ 이상)에 주목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공원 규모 기준: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 제한 없음 / 묘지공원 = 10만㎡ 이상 /
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 = 1만㎡ 이상. 생활권 공원: 소공원 = 제한 없음 / 어린이공원 = 1, 500m^2 이상 /
근린공원 = 유형별 1만~100만㎡ 이상.

NoteBase

문 3. 혼잡(Crowd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으로 밀도에 관계되는 개념이다.

② 지각된 밀도는 물리적 밀도의 고저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혼잡의 정도를 말한다.

③ 일정 면적에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가는 물리적 밀도와 관계가 있다.

④ 주민과의 접촉이 낮은 것은 사회적 밀도가 낮은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혼잡(Crowding)과 밀도(Density)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물리적 밀도·사회적 밀도·지각된 밀도·혼잡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개념이며, 특히 '지각된 밀도'와 '혼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물리적 밀도(Physical Density): 단위 면적당 사람 수처럼 객관적으로 측정된 밀도이다.
지각된 밀도(Perceived Density):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밀도의 수준이다. 물리적 밀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공간 구성·가시성·소음 등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사회적 밀도(Social Density):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상호작용 빈도와 관련된 밀도이다.
혼잡(Crowding): 밀도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느껴져 스트레스나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주관적·심리적 경험이다. 지각된 밀도가 허용 수준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며, 지각된 밀도 자체와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혼잡은 기본적으로 밀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물리적 밀도가 높아질수록 혼잡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선지는 '지각된 밀도'를 '물리적 밀도의 고저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혼잡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각된 밀도가 아니라 혼잡(Crowding)에 대한 설명이다. 지각된 밀도는 밀도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수준이고, 혼잡은 그 지각된 밀도가 불쾌·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심리적 반응이다. 두 개념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③ (O) 일정 면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가는 물리적 밀도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O) 사회적 밀도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상호작용 빈도와 관련되므로, 주민과의 접촉이 낮은 것은 사회적 밀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번은 '지각된 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혼잡'을 정의하고 있다. 지각된 밀도와 혼잡은 밀접하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며, 지각된 밀도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혼잡으로 이어진다는 인과 관계를 기억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혼잡·밀도 관련 문제에서 '지각된 밀도=혼잡의 정도'처럼 두 개념을 동일시하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것이다. 지각된 밀도는 밀도를 인식하는 수준이고, 혼잡은 그 인식이 부정적 심리 반응으로 전환된 상태임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물리적 밀도(객관적 수치) → 지각된 밀도(주관적 인식 수준) → 혼잡(부정적 심리 반응)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외워 둔다. 지각된 밀도가 높다고 반드시 혼잡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개인 차이·통제감·공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원녹지의 보전 · 확충 · 관리 · 이용을 위한 단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② 자연 · 인문 · 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③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체계적 ·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 · 관리하여 여가 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1번

쟁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의 문구를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네 선지 중 법령 문구와 단 한 군데가 다른 선지를 찾아내면 된다. 핵심은 첫 번째 항목의 '발전방향'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등이 관할 구역의 공원녹지를 보전·확충·관리·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적·종합적 계획이다.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시행령에 그 기본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핵심 구분

법령 원문은 '단기발전방향'이 아니라 '장기발전방향'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다루는 장기·종합 계획이므로 발전방향도 장기로 설정한다. 따라서 '단기발전방향'이라고 표현한 선지가 법령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을 위한 단기발전방향을 제시'라고 했으나, 법령은 '단기발전방향'이 아니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틀린 표현 '단기발전방향' → 올바른 표현 '장기발전방향'.
② O: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한다는 것은 법령 문구와 일치한다.
③ O: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법령 문구와 일치한다.
④ O: 체계적·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령 문구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모두 법령 문구와 똑같아 옳은 항목이므로, 내용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이 중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①의 '단기'라는 한 단어이며, 나머지 표현(보전·확충·관리·이용, 쾌적한 삶의 기반)은 법령과 동일해 무심코 읽으면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녹지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이 들어간 장기·종합 계획에서 '발전방향'이 나오면 '장기발전방향'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에 '단기'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기간·범위를 가리키는 수식어(단기/장기, 전부/일부) 한 단어가 뒤바뀐 함정인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첫 항목 = 보전·확충·관리·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기반 형성. '단기'로 바뀌면 오답이라고 외워 둔다.

NoteBase

문 5.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이 60도 대향주차일 때, 차로의 최소 너비[m]는? (단, 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이 아니며, 출입구가 2개인 경우이다.)

① 3.3

② 3.5

③ 4.5

④ 6.0

정답 3번

쟁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노외주차장 차로의 최소 너비는 '주차형식'과 '출입구 개수(1개냐 2개 이상이냐)'의 두 변수로 결정된다. 이 문항은 60도 대향주차 + 출입구 2개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차로 너비 값을 묻는다.

용어 풀이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차로: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통로로, 주차구획과 구분된다.
대향주차: 차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차를 마주 보게(서로 향하게) 배치하는 주차 방식이다.
출입구 2개: 진입로와 진출로가 분리되어 일방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출입구 1개(양방향 통행)보다 요구되는 차로 너비가 작다.

핵심 구분

차로 너비는 주차각도가 클수록(직각에 가까울수록), 출입구가 적을수록(1개) 더 넓게 요구된다. 같은 주차형식이라도 출입구 2개 이상이면 너비 기준이 완화된다. 60도 대향주차의 경우 출입구 2개 이상은 4.5m, 출입구 1개는 5.5m이다.

선지별 해설

① 3.3 → X. 이 값은 평행주차(출입구 2개 이상)의 차로 너비이다. 60도 대향주차 조건과 맞지 않는다.
② 3.5 → X. 이 값은 45도 대향주차 또는 교차주차(출입구 2개 이상)의 차로 너비이다. 주차각도 60도와 맞지 않는다.
③ 4.5 → O. 60도 대향주차이고 출입구가 2개(이상)인 경우의 차로 최소 너비가 4.5m로, 문항의 모든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④ 6.0 → X. 이 값은 직각주차의 차로 너비이며, 직각주차는 출입구 개수와 관계없이 6.0m이다. 60도 대향주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에 나온 3.3, 3.5, 6.0이 모두 표에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주차형식의 값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3.3(평행), 3.5(45도 대향·교차), 6.0(직각)을 60도 대향과 혼동하면 틀린다. 또한 출입구 1개 값(60도 대향=5.5m)과 2개 이상 값(4.5m)을 뒤바꿔 고르지 않도록 조건 '출입구 2개'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로 너비 문제는 (1) 주차형식(평행·직각·60도·45도·교차)과 (2) 출입구 개수(1개 vs 2개 이상)를 발문에서 먼저 분리해 읽는다. 60도 대향 + 출입구 2개 이상이면 곧바로 4.5m로 답한다. 직각이 보이면 무조건 6.0m, 평행이 보이면 출입구 2개 이상은 3.3m로 즉시 매칭한다.

암기 포인트

노외주차장 차로 너비(출입구 2개 이상 기준): 평행 3.3 / 45도·교차 3.5 / 60도 4.5 / 직각 6.0. 출입구 1개면 각각 5.0 / 5.0 / 5.5 / 6.0으로 커진다. '60도 대향=4.5(2개)·5.5(1개)'를 한 쌍으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6. 「조경설계기준(2024)」상 교육연구단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림, 하천, 계곡, 호수 등의 자연환경조건 특히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 활용한다.

② 보행통로, 산책로 등은 녹도로 설계하고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적정거리마다 배치한다.

③ 대학캠퍼스는 여름철의 짙은 녹음과 겨울철의 일조 확보를 위해 낙엽수 위주로 배식한다.

④ 연구소, 연수원 복합단지 등은 수림이 우거진 야산 등의 전원지대를 선정하여 녹지율을 50% 이상 확보한다.

정답 4번

쟁점

「조경설계기준(2024)」상 교육연구단지 중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의 녹지율 확보 기준 수치가 50%인지 60%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용어 풀이

녹지율: 전체 대지 면적 대비 녹지(잔디·수목·화단 등 식재 공간)가 차지하는 비율. 교육연구단지에서는 연구·교육 환경의 쾌적성과 소음·대기오염 차단을 위해 법정 최저 녹지율을 규정한다.

핵심 구분

교육연구단지 전반의 녹지 확보 원칙(넓은 녹지, 다수 수목 식재) vs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의 구체적 수치 기준: 녹지율 60% 이상. 50%는 오기재이므로 틀린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산림, 하천, 계곡, 호수 등의 자연환경조건, 특히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활용한다 — 옳다. 「조경설계기준」 교육연구단지 항목의 입지 및 자연환경 활용 원칙에 부합한다.
② 보행통로·산책로 등은 녹도로 설계하고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적정거리마다 배치한다 — 옳다. 교육연구단지의 보행·휴게 공간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대학캠퍼스는 여름철의 짙은 녹음과 겨울철의 일조 확보를 위해 낙엽수 위주로 배식한다 — 옳다. 낙엽수는 여름에 잎이 무성해 녹음을 제공하고 겨울에 잎이 떨어져 일조를 확보하는 특성이 있어 교육연구단지 식재 방침에 부합한다.
④ 연구소, 연수원 복합단지 등은 수림이 우거진 야산 등의 전원지대를 선정하여 녹지율을 50% 이상 확보한다 — 틀렸다. 「조경설계기준」상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의 녹지율 기준은 60% 이상이다. 50%로 낮춰 서술한 것이 오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50% 이상'이라는 수치가 함정이다.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는 자연환경 속 전원지대에 입지하는 특성상 일반 도심 시설보다 높은 녹지율(60% 이상)을 요구한다. 50%와 60%는 10%p 차이이므로 정확한 수치를 외워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설계기준」 교육연구단지 문항에서 특정 시설 유형의 녹지율 수치가 제시되면,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 = 60% 이상임을 기준으로 선지 수치의 크고 작음을 판정한다. 나머지 원칙 선지(자연환경 보전·활용, 녹도 설계, 낙엽수 위주 배식)는 모두 옳은 내용이므로 수치 선지에 집중한다.

암기 포인트

연구소·연수원 복합단지 녹지율 → 60% 이상 (50%가 아님). 낙엽수 위주 배식 이유 → 여름 녹음 + 겨울 일조 확보(두 계절 효과를 한 수종으로 해결).

NoteBase

문 7.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상 공원녹지 수요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피율이란 도시 전체의 면적 중 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하천의 수면 면적과 광장 등의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된다.

② 1인당 공원면적은 공원녹지 수요 분석의 지표로 활용되며 도시 전체 및 생활권 단위에서 공원면적(m^2)/인구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율은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산림도 포함한다.

④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은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생활권별 서비스 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수요분석 지표(녹피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녹지율, 공원서비스 수준)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다. 특히 공원녹지율 산정 범위에 일반 산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녹피율: 도시 전체 면적 중 수관투영면적의 비율. 하천 수면, 광장 등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한다.

1인당 공원면적: 도시 전체 및 생활권 단위로 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원녹지 수요 분석의 핵심 지표이다.

공원녹지율: 도시 전체 면적 또는 시가화지역 면적에 대한 공원·녹지의 비율. 여기서 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을 의미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산림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생활권별 서비스 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녹피율은 도시 전체 면적 중 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이며, 하천 수면이나 광장처럼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은 제외된다. 지침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② (O) 1인당 공원면적은 공원녹지 수요 분석의 지표로 활용되며, 도시 전체 및 생활권 단위에서 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X)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한정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산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산림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④ (O)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은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생활권별 서비스 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공원녹지율을 '공원과 녹지 전체의 비율'로 막연하게 이해하면 일반 산림도 포함될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산림은 산정 범위 밖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녹지율 관련 선지에서 '일반 산림', '미결정 녹지', '비지정 산지' 등의 표현이 포함을 주장하면 오답이다.
공원녹지율 = 도시(시가화)면적 대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 면적의 비율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원녹지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만 포함, 미결정 일반 산림은 제외.
녹피율 = 수관투영면적 / 도시 전체 면적 (비녹지 피복 면적 제외).
1인당 공원면적 = 공원면적(㎡) / 인구수 (도시 전체·생활권 단위 모두 산정).

NoteBase

문 8. 리튼(Litton)이 제시한 훼손 가능성과 관련된 일반원칙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카이라인, 능선 등과 같은 모서리 또는 경계 부분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②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③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토양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④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리튼(Litton)이 제안한 시각적 훼손 가능성(Visual Absorption Capability, VAC) 판단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VAC는 '어떤 장소가 개발·훼손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를 뜻하며, VAC가 높을수록 시각적 훼손이 눈에 잘 띈다.

핵심 개념

리튼의 VAC 원칙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형: 능선·스카이라인처럼 경계·모서리 부분은 배경과 대비가 강해 VAC가 높다(①).
고도: 고지대는 광역 조망점에서 잘 보이므로 VAC가 높고, 저지대는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VAC가 낮다(②).
토양색: 밝은색 토양은 주변과 대비가 강해 훼손이 두드러지므로 VAC가 높고, 어두운색 토양은 대비가 약해 VAC가 낮다(③).
식생: 혼효림(혼합림)은 수종 다양성이 높아 훼손을 시각적으로 흡수·은폐하는 능력이 크므로 VAC가 낮다. 단순림(동령 단일수종)은 훼손이 균일한 수관에서 바로 드러나 VAC가 높다.

선지별 해설

① 스카이라인, 능선 등 모서리·경계 부분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 옳다. 배경(하늘 등)과의 대비가 극대화되는 경계 지점은 훼손이 즉각 시야에 들어온다.
② 저지대보다 고지대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 옳다. 고지대는 먼 거리 조망점에서도 노출되어 더 넓은 가시권에 걸친다.
③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토양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 옳다. 밝은색은 주변 녹지·암반과 명도 대비가 강해 훼손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④ 단순림보다 혼효림의 시각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 — 옳지 않다. 혼효림은 수종·수고·수관 형태가 다양해 훼손 부위를 시각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단순림보다 크다. 따라서 훼손 가능성(VAC)은 혼효림이 낮고 단순림이 높다. 선지는 혼효림과 단순림의 관계를 뒤바꿔 서술하고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번은 '혼효림'과 '단순림'의 VAC 관계를 정반대로 제시하는 함정이다. 혼효림은 시각적 흡수력이 높아 VAC가 낮고, 단순림은 흡수력이 낮아 VAC가 높다. '다양성이 높으면 흡수력이 높다 → VAC가 낮다'는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VAC 문항은 '시각적 대비가 강할수록 / 노출이 클수록 / 흡수력이 낮을수록 VAC가 높다'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각 변수를 검토한다. 식생 다양성(혼효림 > 단순림)은 흡수력을 높여 VAC를 낮추므로, '혼효림 VAC 낮음, 단순림 VAC 높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튼 VAC — VAC 높음(훼손 잘 보임): 경계·능선, 고지대, 밝은색 토양, 단순림, 급경사, 암석 노출지. VAC 낮음(훼손 잘 안 보임): 평탄지·저지대, 어두운색 토양, 혼효림, 완경사, 식생 밀도 높음. '혼효림=흡수 잘 함=VAC 낮음'을 쌍으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조경설계기준(2024)」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②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③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의 관계를 검토한다.

④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반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외에도 투수포장이나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다양한 친환경계획기법을 고려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경설계기준(2024)」에서 '지구단위계획' 항목에 속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문제다. 각 선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기준의 어느 절(지구단위계획인지 주거단지계획인지)에 규정된 내용인가가 정답을 가른다. 내용 자체는 맞지만 다른 절의 설명을 끼워 넣은 선지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된다.

핵심 개념

「조경설계기준」은 계획 단위별로 절을 나눈다. 지구단위계획 절에는 생태계 보존을 우선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공원·녹지 계획 시 녹지축 단절 방지, 주택법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최저한도를 필수 수립항목으로 정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피해 정도·기반시설용량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한편 생태면적률을 높이는 인공지반녹화·옥상녹화·벽면녹화와 투수포장·빗물 저류 및 침투 등 친환경계획기법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주거단지계획 절에 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선지의 정오는 '친환경기법으로 타당한가'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절의 설명인가'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여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 지구단위계획 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옳음)
②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 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옳음)
③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의 관계를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 절의 원문과 일치한다. 원문은 주변지역과의 조화 외에 피해 정도, 기반시설용량 등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옳음)
④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반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외에도 투수포장이나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다양한 친환경계획기법을 고려한다. → 친환경계획기법으로서 내용은 타당하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주거단지계획 절에 규정된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으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음)

오답 포인트

④는 서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소속 절이 다른 것이 함정이다. 생태면적률 향상 기법(인공지반·옥상·벽면녹화)과 투수포장·빗물 저류 및 침투는 모두 타당한 친환경계획기법이지만 「조경설계기준」에서는 주거단지계획 절의 내용이다. 내용의 진위만 보고 '맞는 말이니 옳은 선지'로 처리하면 틀린다. ③의 '주택법 기반시설·건축물 한도'는 지구단위계획 절의 정확한 원문이므로 옳은 선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설계기준」의 'OO계획에 대한 설명' 문제는 선지 내용이 일반적으로 맞는지가 아니라 해당 절(지구단위계획·주거단지계획 등)에 실제 규정된 내용인지로 판별한다. 생태면적률·투수포장·빗물 저류 등 단지 차원의 친환경기법이 지구단위계획 설명에 섞여 있으면 절이 어긋난 오배치 선지로 의심한다. 반대로 경관생태학적 접근, 녹지축 단절 방지, 주택법 기반시설·건축물 한도는 지구단위계획 절의 정설이므로 옳은 선지로 본다.

암기 포인트

지구단위계획 절: 경관생태학적 접근(환경·공간계획 연계), 녹지축 단절 방지, 주택법 기반시설·건축물 최고·최저한도 필수 수립항목. 주거단지계획 절: 생태면적률 향상 기법(인공지반·옥상·벽면녹화)과 투수포장·빗물 저류 및 침투. 선지의 정오는 내용 진위가 아니라 소속 절로 가린다.

NoteBase

문 10.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상 하천구역 내 수목 식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 제방의 비탈면에는 침수나 바람에 강하고, 뿌리가 깊은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②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의 목적 하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으나 수리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 하도의 고수부지에 키 큰 나무 식재 시 하천 횡방향의 나무 간격은 25m 이상 유지한다.

④ 굴입하도의 제방 상단 및 앞비탈면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할 경우, 간격은 수종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상 하천 제방 비탈면에 적합한 수종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뿌리가 깊은 수종(심근성)'이 제방 비탈면에 적합한지 여부이다.

핵심 개념

하천 제방 비탈면에는 침수와 바람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되, 뿌리가 지나치게 깊이 뻗는 심근성 수종은 제방 내부 구조(흙댐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는 비탈면에 뿌리가 얕은(천근성) 수종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뿌리가 깊은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반면 ②의 수리적 안전성 확보 요건, ③의 고수부지 횡방향 간격 기준, ④의 굴입하도 제방 식재 간격 기준은 모두 이 고시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하천 제방의 비탈면에는 침수나 바람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뿌리가 깊은 수종'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제방 비탈면에 심근성(뿌리가 깊은) 수종을 식재하면 뿌리가 제방 본체를 파고들어 제방 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기준에서는 천근성(뿌리가 얕은) 수종을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O) 생태복원·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식재도 허용되지만, 수리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기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③ (O)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 하도 고수부지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할 때 하천 횡방향 나무 간격은 25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O) 굴입하도의 제방 상단 및 앞비탈면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간격은 수종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는 내용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뿌리가 깊은 수종'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하천 제방은 흙으로 쌓은 구조물이므로, 깊이 뻗는 뿌리는 제방 내부를 훼손할 수 있다. '침수와 바람에 강한' 조건은 맞지만 '뿌리가 깊은'이라는 조건은 틀리다. 두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전체를 옳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방 비탈면 수종 조건 문제가 나오면 '침수·바람에 강한 + 천근성(뿌리 얕은)' 조합이 정답이다. '심근성(뿌리 깊은)'이 등장하면 틀린 선지로 표시한다. 고수부지 횡방향 간격(25m)과 굴입하도의 수종·관리 여건에 따른 간격 기준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제방 비탈면 = 침수·바람에 강한 수종 + 천근성(뿌리 얕은). 심근성(뿌리 깊은) 수종은 제방 비탈면에 부적합하다. 고수부지 키 큰 나무 횡방향 간격 = 25m 이상(수리계산 불필요 시).

NoteBase

문 11. 자연기반해법(NbS)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NbS는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이다.

② NbS는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재해위험 저감 등 다기능성을 추구한다.

③ NbS는 회색 인프라의 기술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경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다.

④ NbS는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맥락에 맞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기반해법(NbS)의 정의, 목적, 핵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특히 NbS가 회색 인프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변별 포인트이다.

핵심 개념

NbS(Nature-based Solutions, 자연기반해법)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EU가 제안한 개념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재해위험·식량안보 등 사회적·환경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이다. 회색 인프라(콘크리트·강철 등 인공 구조물)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태학·환경과학·도시계획·조경 등 다학제 영역에 걸쳐 발전해 왔다. 핵심 원칙은 생태계 기반 접근, 다기능성 추구, 과학적 근거,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 맥락 반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NbS는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이다. IUCN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② (O) NbS는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적응·완화, 재해위험 저감, 도시 열섬 완화 등 다기능성(co-benefits)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 단일 목적 공학 기술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X) NbS는 회색 인프라의 기술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NbS의 목적은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 회색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인공 구조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NbS는 조경 분야에서만 발전된 기술이 아니라 생태학·환경과학·도시계획 등 다학제 영역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회색 인프라의 효과를 극대화"→"회색 인프라를 대체·보완하고 그 의존도를 줄이는 것".
④ (O) NbS는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맥락에 맞게 설계·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IUCN NbS 글로벌 표준의 핵심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회색 인프라의 기술적 효과를 극대화"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NbS는 회색 인프라와 대립·보완 관계에 있으며, 회색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조경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라는 표현도 오류로, NbS는 단일 분야가 아닌 다학제적 개념이다. 두 가지 오류가 중첩되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NbS 관련 선지가 나오면 먼저 "회색 인프라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NbS는 자연을 활용해 회색 인프라를 대체·보완하는 방향이지, 회색 인프라의 효과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다. 또한 기능이 단일(예: 홍수 저감만)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다고 서술하면 오답 후보이다.

암기 포인트

NbS 4대 특징: 생태계 기반(자연 보전·복원·관리) / 다기능성(기후·생태·사회 동시 편익) / 과학적 근거+이해관계자 참여 / 지역 맥락 반영. NbS ≠ 회색 인프라 강화, NbS = 회색 인프라 대체·보완. 이 네 가지를 세트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2.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②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④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2번

쟁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이다. 핵심은 부지면적 변경 허용 범위가 지구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5천제곱미터 범위지만,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더 엄격하게 2천제곱미터 범위로 제한된다.

용어 풀이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공원계획을 바꿀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영향이 작은 변경 사항을 시행령에서 한정 열거한 것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 중 생태적으로 가장 보전 가치가 높아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지구이다. 공원마을지구=주민의 생활 근거지로서 취락이 형성된 지구이다.

핵심 구분

부지면적 변경의 경미 기준은 지구별로 다르다. 일반(공원자연환경지구 등)=5천제곱미터 범위 / 공원자연보존지구=2천제곱미터 범위.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원자연보존지구'와 '5천제곱미터'가 짝지어지면 틀린 조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는 보전 강도를 높이는 용도지구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② X: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부지면적 변경 허용 범위는 5천제곱미터가 아니라 2천제곱미터이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공원자연보존지구 5천제곱미터) → 올바른 표현(공원자연보존지구 2천제곱미터, 5천제곱미터는 그 밖의 지구 기준).
③ O: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O: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부지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소규모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번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5천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시행령에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5천제곱미터는 일반 지구 기준이고, 괄호 안에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라는 더 엄격한 단서가 붙어 있다. 숫자만 보고 맞다고 넘기면 함정에 빠진다. ③번의 '100분의 20'을 너무 크다고 의심해 오답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은데, 확대 한도 20퍼센트는 시행령이 명시한 경미한 변경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지면적 숫자가 나오는 선지는 '어느 지구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가 등장하면 허용 범위를 2천제곱미터로, 그 밖의 지구이면 5천제곱미터로 대응시켜 숫자가 바뀌어 있는지 본다. 이 문항처럼 보존지구에 5천제곱미터를 붙여 놓으면 그 선지가 정답(해당하지 않는 것)일 확률이 높다.

암기 포인트

공원계획 경미한 변경 부지면적 기준=일반 5천제곱미터 / 공원자연보존지구 2천제곱미터로 외워 둔다. 더불어 결정·고시된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100분의 20 이하 확대까지 경미한 변경이라는 점, 용도지구를 보전 강도가 높은 쪽으로 바꾸는 변경과 동일 부지 내 건축물 증축·위치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3. 「조경설계기준(2024)」상 생태숲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숲 내 시설물은 야생동물 서식처, 식생군락식재, 학습 및 관찰시설, 자연학습 및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율이 6 :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조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교목층에 자연재료를 활용한 인공 새집을 조성한다.

④ 생태숲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4번

쟁점

조경설계기준(2024)에서 정한 생태숲의 조성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네 선지 중 기준과 어긋나는 단 하나를 찾아야 한다. 핵심은 생태숲 지정 대상이 되는 산림 면적의 수치다. 생태숲은 작은 면적의 도시녹지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점이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용어 풀이

생태숲은 야생동물의 서식과 식생군락의 보전, 자연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자연재료는 목재, 돌, 흙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며, 인공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플라스틱 등 제작 가공된 재료를 가리킨다.

핵심 구분

생태숲은 소규모 녹지(원칙 아님)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원칙)을 대상으로 한다 → 지정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그보다 큰 규모(30만 제곱미터 이상 수준)를 기준으로 한다. 재료 사용은 자연재료 우선이 원칙이며,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율은 6:4 이상으로 자연재료가 더 많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생태숲 내 시설물은 야생동물 서식처, 식생군락식재, 학습 및 관찰시설, 자연학습 및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생태숲의 목적인 서식 보전과 자연학습을 뒷받침하는 시설 구성이다.

② O —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율이 6:4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생태숲은 자연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연재료의 비중이 더 크게 유지된다.

③ O — 조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교목층에 자연재료를 활용한 인공 새집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둥지와 보금자리를 보완하여 조류의 번식과 서식을 돕는 조치다.

④ X — '생태숲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틀린 표현이다 → 생태숲은 그보다 큰 규모(30만 제곱미터 이상 수준)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표현이 옳다. 면적 수치를 10만으로 낮춰 제시한 점이 기준과 어긋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 ②의 '6:4 이상'을 비율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속단하면 정답을 놓친다. 6:4는 자연재료가 더 많도록 한 정상적인 기준값이므로 옳은 선지다. 정작 틀린 것은 ④의 면적 수치이며, '10만'이라는 작아 보이지 않는 숫자에 무심코 넘어가지 않도록 면적 기준 자체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숲 문제에서 면적·비율 같은 숫자 선지가 보이면 그 수치부터 검증한다. 면적 기준은 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임을 기준점으로 삼고, 재료 비율은 자연재료가 더 많은 6:4 이상임을 확인한다. 부정형 발문이므로 옳은 선지 세 개를 먼저 지우고 남는 하나를 답으로 고른다.

암기 포인트

생태숲 지정 면적=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 자연재료:인공재료=6:4 이상(자연재료가 더 많음) / 시설물=서식처·식생군락식재·학습관찰·자연학습교육 / 조류 다양성=교목층에 자연재료 인공 새집.

NoteBase

문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완충녹지의 개념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충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② 완충녹지는 도시 내 공원 및 녹지 비율 확보를 위한 개념적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③ 완충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설치가 자유로우며, 전체 면적의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④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 4번

쟁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상 녹지 3종(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개념 구분과,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 설치기준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발문은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형태이므로 완충녹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선지 하나만 정답이다.

용어 풀이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이다.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이다. 녹화면적률: 녹지면적 중 수목·잔디 등 식물로 피복(녹화)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핵심 구분

녹지의 종류별 목적이 다르다. 완충녹지=공해·재해 차단(방재·차폐), 경관녹지=자연환경 보전·복원과 도시경관 향상, 연결녹지=녹지를 선형으로 연결해 여가·휴식과 생태통로 기능.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공해 차단과 사고 시 피난지대 기능을 하는 일반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 80% 이상이 원칙이고, 전용주거지역·교육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해야 하는 시설에 인접한 차단용은 50% 이상, 재해 피난 목적은 7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가 아니라 경관녹지의 정의이다. (완충녹지 → 경관녹지)
② X: 완충녹지는 녹지의 한 종류로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된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분류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이다. (분류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분류된다)
③ X: 완충녹지는 녹지로서 그 기능 유지를 위해 건축물 설치가 자유롭지 않고 엄격히 제한된다. '건축물 설치가 자유롭고 전체 면적의 50%까지 건축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틀린 표현이다. (50%까지 건축 가능 → 녹지 기능 유지를 위해 건축이 제한됨)
④ O: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사고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시행규칙상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복원·개선·도시경관 향상'이라는 경관녹지의 표지를 완충녹지로 바꿔치기한 함정이고, ②는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함정이다. ③의 '50%까지 건축 가능'은 녹지에 건축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가장 쉽게 걸러낼 수 있다. 녹화면적률 50%·70%·80%의 숫자를 목적별로 뒤섞는 함정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녹지 문제는 먼저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목적부터 구분한다. '복원·경관 향상'이 보이면 경관녹지, '공해·재해 차단·피난'이 보이면 완충녹지로 본다. 녹화면적률은 일반 완충녹지(매연 차단·피난) 80%, 전용주거·교육연구시설 인접 차단용 50%, 재해 피난용 70%로 숫자를 묶어 기억한다. 녹지를 두고 '건축이 자유롭다'는 식의 진술은 거의 오답이다.

암기 포인트

완충녹지 녹화면적률: 매연 등 공해 차단·사고 피난지대 기능 = 80% 이상 / 전용주거지역·교육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해야 하는 시설 인접 차단용 = 50% 이상 / 재해 피난용 = 70% 이상. 경관녹지 = 자연환경 보전·복원으로 도시경관 향상.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이며 건축은 제한된다.

NoteBase

문 15. 「경관법 시행령」 상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구분'으로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 3번

쟁점

경관법 시행령 별표(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는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사업을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눈다. 1. 도시의 개발 / 2. 산업단지의 조성 / 3. 특정지역의 개발이다. 이 문항은 네 개의 개별 사업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 구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경관 심의: 개발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이다.
별표의 '구분': 동일한 별표 안에서 개발사업을 성격별로 묶은 분류로, 도시의 개발(주거·도시기반형), 산업단지의 조성(산업·생산형), 특정지역의 개발(특수목적 지역형)으로 나뉜다.

핵심 구분

도시의 개발(별표 1번 구분)에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간다. 반면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특정지역의 개발(별표 3번 구분)에 속한다. 즉 '기업도시=특정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 → O. 별표 '1. 도시의 개발' 구분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시의 개발에 해당한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 O. 별표 '1. 도시의 개발' 구분의 첫 번째 항목으로,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 대상이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X (정답). 이 사업은 '1. 도시의 개발'이 아니라 '3. 특정지역의 개발' 구분에 속한다. '도시의 개발에 해당' → '특정지역의 개발에 해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O. 별표 '1. 도시의 개발' 구분에 포함되며,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전 심의 대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물류단지 개발사업(①)을 '산업·유통 성격'이라는 인상만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착각해 정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별표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의 개발' 구분에 배치되어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 구분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준산업단지 정비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네 선지 중 도시의 개발 구분 밖에 있는 하나만 찾으면 된다. 기업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보이면 이는 '특정지역의 개발'이므로 도시의 개발이 아니다. 반대로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혁신도시·물류단지·역세권개발은 모두 도시의 개발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3구분: 도시의 개발 / 산업단지의 조성 /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3종(기업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만 따로 외워 두면 나머지는 도시의 개발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기업도시=특정지역의 개발'을 핵심으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③ 어항시설 중 외곽시설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

④ 항만시설 중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계류시설인 경우

정답 2번

쟁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에 규정된 협의 대상 요건의 수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네 선지 중 별표의 기준과 어긋나게 적힌 한 선지를 찾아야 한다. 산림훼손 면적 비율, 외곽시설 길이, 공유수면 매립 면적의 숫자가 핵심 함정이다.

용어 풀이

자연경관영향 협의=개발사업으로 산지·하천·해안 등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사업 승인 전에 환경부(지방환경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사전 절차이다. 외곽시설=방파제·방사제 등 항(港) 내부를 외해의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이다. 계류시설=안벽·물양장·잔교 등 배를 대어 두는 시설이다.
공유수면=바다·바닷가·하천 등 국가 소유의 물에 잠긴 땅이다.

핵심 구분

별표의 산림훼손 면적 비율은 개발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학교 설치공사처럼 면적이 작은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20(20퍼센트) 이상이면 협의 대상이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산림훼손 비율 기준이 100분의 30(30퍼센트) 이상으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어항시설은 외곽시설 길이 300미터 이상, 항만시설은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을 수반하는 계류시설이 협의 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별표의 협의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② X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30퍼센트(100분의 30) 이상일 때 협의 대상이다. "20% 이상" → "30%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어항시설 중 외곽시설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는 별표에 규정된 협의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④ O — 항만시설 중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계류시설인 경우는 별표에 규정된 협의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가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이라는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 둘 다 맞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산림훼손 비율 기준은 사업 종류에 따라 갈리며, 규모가 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30퍼센트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표현이라고 같은 숫자가 정답인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산림훼손 비율 문제가 나오면, 소규모 시설(학교 등)은 20퍼센트, 대규모 사업(산업단지 등)은 30퍼센트라는 점을 먼저 떠올린 뒤 선지의 숫자를 대조한다. 항만·어항은 면적·길이 단위(300미터, 3만제곱미터)가 함정이므로 단위와 숫자를 한 글자씩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경관영향 협의 산림훼손 비율: 학교 등 소규모=20퍼센트 이상 / 산업단지 등 대규모=30퍼센트 이상. 어항 외곽시설=300미터 이상, 항만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산업단지는 30"으로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7.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과 그에 따른 국토 자연환경 보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GBF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지, 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의 최소 20%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우리나라는 GBF 이행을 위해 '2030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토의 1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③ GBF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기후변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등 통합적 목표를 제시하며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을 강조한다.

④ GBF 이행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 내에서 이뤄지며, 각 국가는 이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쿤밍-몬트리올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핵심 수치(복원 목표 비율)와 이행 체계(CBD vs. UNFCCC), 자연기반해법(NbS) 강조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20%'와 '30%', '10%'와 '30%'처럼 수치를 바꿔 놓는 것이 오답 선지의 핵심 함정이다.

핵심 개념

쿤밍-몬트리올 GBF는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203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체계이다. 2030년까지의 23개 실천목표와 2050년까지의 4개 장기목표로 구성된다.

30×30 목표: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Target 3).
복원 30% 목표(Target 2): 훼손된 육지, 내수, 해안·해양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 추진 상태로 만드는 것.
자연기반해법(NbS): 기후변화 적응·완화, 식량안보, 토지이용 등 다중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GBF가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한국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GBF 30×30에 맞춰 전 국토의 30% 보호지역 확대를 목표로 설정한다.
GBF 이행 체계: CBD(생물다양성협약) 체계 내에서 이행하며, UNFCCC(기후변화협약)와는 별도의 국제 체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GBF는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20%가 아니라 최소 30%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Target 2)로 한다. '20%'는 존재하지 않는 수치이며, '30%'로 정정해야 한다.
② [X] 우리나라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전 국토의 10%가 아니라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BF의 30×30 목표에 맞춘 것이며, '10%'는 틀린 수치이다.
③ [O] GBF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통합적 목표를 제시하며, 자연기반해법(NbS)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X] GBF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계 내에서 이행된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체계와는 별개이며, NDC(국가결정기여)는 UNFCCC 기후 목표 이행 수단이지 GBF 이행 수단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①의 '20%'는 GBF 어디에도 없는 수치이다. GBF 복원 목표는 일관되게 '30%'이며, 보호지역 목표(30×30)와 같은 숫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②의 '10%'는 이전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11)에서 육상 보호지역 목표로 쓰이던 수치이다. 쿤밍-몬트리올 GBF에서는 30%로 상향되었다.
④는 GBF와 NDC·UNFCCC를 엮어 놓은 오답이다. 두 협약은 별도 체계로 운영되며, 일부 정책적 연계는 있으나 GBF 이행이 UNFCCC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BF 관련 문제에서 수치가 나오면 두 가지만 확인한다. 보호지역 목표=30%(30×30), 복원 목표=30%이다. '20%'나 '10%'가 등장하면 오답 선지이다. 이행 체계가 등장하면 GBF=CBD 체계, 기후=UNFCCC 체계로 분리해 판단한다. NbS 강조 여부는 옳은 설명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암기 포인트

GBF 핵심 수치: 보호지역 30%(30×30, Target 3) / 복원 30%(Target 2) — 둘 다 30%임을 묶어 기억한다.
한국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보호지역 30% 확대(10%가 아님).
GBF 이행 체계: CBD(생물다양성협약) — UNFCCC(기후변화협약)와 별도.
GBF = 통합적 목표(기후·식량·토지) + NbS 강조.

NoteBase

문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 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 중 도서관은 1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시계탑으로 한정된다.

③ 근린공원 중 도보권 근린공원 및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이다.

④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이다.

정답 1번

쟁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3](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에서 공원 종류별로 어떤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소공원 ·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도서관의 규모 제한, 어린이공원 편익시설의 한정 범위, 근린공원 세부 종류별로 적합한 이용 활동(일상 vs 주말)이 핵심 쟁점이다.

용어 풀이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근린공원: 근린 거주자의 보건 · 휴양 ·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며 유치거리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권 · 도보권 · 도시지역권 · 광역권으로 세분된다. 편익시설: 화장실 · 음수장 · 공중전화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핵심 구분

소공원 · 어린이공원의 도서관은 '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설치 가능(규모 제한 있음). 어린이공원 편익시설은 화장실 · 음수장 · 공중전화실로 한정(시계탑은 포함되지 않음). 근린공원 활동 구분:
근린생활권 ·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 · 오락 · 학습 또는 체험 활동 / 도시지역권 · 광역권 근린공원=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 · 오락 활동.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 중 도서관은 '높이 1층,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하므로, 도서관은 1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준과 일치한다.
② X: 어린이공원의 편익시설은 화장실 · 음수장 · 공중전화실로 한정된다. '시계탑'을 포함시킨 것이 틀렸다. 틀린 표현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시계탑으로 한정된다' → 올바른 표현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 한정된다(시계탑 제외)'.
③ X: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 · 오락 활동에 적합한 시설은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일상'의 활동에 적합한 시설이다. 틀린 표현 '도보권 근린공원 및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주말의 옥외 휴양' → 올바른 표현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 주말의 옥외 휴양'.
④ X: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 · 오락 · 학습 또는 체험 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이다. 문화공원 · 체육공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 '… 공원은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이다' → 올바른 표현 '… 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편익시설 목록에 그럴듯한 '시계탑'을 끼워 넣어 한정 범위를 흐린다. ③과 ④는 '일상'과 '주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근린공원의 세부 종류(도보권 vs 도시지역권)와 공원 종류(근린공원 vs 문화 · 체육공원)를 서로 뒤바꿔 함정을 만든다. 활동의 시점(일상/주말)과 공원 종류를 짝지어 기억하지 않으면 ③④에서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종류별 설치 가능 시설 문제는 먼저 '규모 제한이 붙는 시설(소공원 · 어린이공원의 도서관=1층, 33제곱미터 이하)'과 '한정 목록(어린이공원 편익시설=화장실 · 음수장 · 공중전화실)'을 떠올린다. 근린공원이 나오면 '일상=근린생활권 · 도보권 / 주말=도시지역권 · 광역권'을 대입해 활동 시점과 공원 종류의 짝이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이 갈린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 · 어린이공원 도서관=높이 1층 ·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어린이공원 편익시설=화장실 · 음수장 · 공중전화실(시계탑 없음). 일상의 휴양 · 오락 · 학습 · 체험=근린생활권 · 도보권 근린공원, 주말의 휴양 · 오락=도시지역권 · 광역권 근린공원.

NoteBase

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 가능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시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 시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쟁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외웠는지 묻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네 선지 중 세 개는 시행령 기준과 일치하고 한 개만 기준을 뒤집어 놓은 것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임야와 경지정리된 농지를 건축·공작물 부지에 '포함'하라고 했는지 '제외'하라고 했는지의 방향 판단이다.

용어 풀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행위허가=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절차이다.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핵심 구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허가 기준은 '자연 훼손 최소화'가 대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식생·경관 가치가 높은 임야나 농업기반이 정비된 경지정리 농지는 부지에서 '제외'(보전)하는 방향이고, 형질변경·건폐율·용적률은 모두 상한을 두어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포함하여야 한다'는 보전 원칙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부지에 가능한 한 포함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
자연·농업기반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맞다.
② O —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시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기준과 일치한다.
③ O —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한 기준과 일치한다.
④ O — 공작물 설치 시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한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2배', ④의 '100분의 20', '100퍼센트' 같은 숫자가 그럴듯해서 거기서 함정을 찾으려다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의 오답은 숫자가 아니라 ①의 '포함하여야'라는 방향 단어에 있다. 보전 원칙(제외)을 개발 방향(포함)으로 뒤집은 한 단어가 정답의 열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기준 문제가 나오면 먼저 '보전이 원칙'이라는 큰 방향을 잡고 각 선지를 본다. 임야·경지정리 농지는 '제외(보전)', 높이·층수·형질변경·건폐율·용적률은 '상한 억제'가 정상이다. 어느 선지가 보전·억제 방향을 반대로 적어 두었는지(포함/확대/완화) 찾으면 그것이 옳지 않은 선지다.

암기 포인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별표 3 핵심 숫자: 건축물 높이 최대 12m·3층 이하(실내체육시설 제외) /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면적+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 용적률 100% 이내 / 임야·경지정리 농지는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 방향어 '제외 vs 포함'을 한 묶음으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20.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 자연도의 작성 중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 · 문화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③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 분포하고 있는 지역

④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정답 2번

쟁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규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해당 지역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1등급 권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아닌 것' 유형이므로, 각 선지가 1등급 기준 조문에 열거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핵심 구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는 네 가지 유형이 열거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1등급 권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은 1등급 권역 조문 (나)에 명시된 유형이다. 1등급이 맞다.

② (X)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별도관리지역의 기준이다. 1등급 권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O)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1등급 권역 조문 (라)에 명시된 유형이다. 1등급이 맞다.

④ (O)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은 1등급 권역 조문 (다)에 명시된 유형이다. 1등급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와 '도시의 녹지보전'은 생태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하는 1등급과 성격이 다르다.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는 별도 카테고리이다. 선지 ②가 얼핏 보전 지역처럼 보여 1등급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조문 열거 목록에 없는 항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등급 권역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선지가 '생태적 우수성·생물다양성·분포한계·경관 수려'에 해당하면 1등급,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 또는 도시 녹지보전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한다. 발문이 '아닌 것'임을 먼저 확인하고, 1등급 조문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1등급 권역 4가지: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생태통로, ②생태계 우수·경관 수려, ③생물다양성 풍부·보전가치 큰 생물자원 존재·분포, ④생물 지리적 분포한계·주요 식생 유형 대표.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역사·문화·경관적 가치, 도시 녹지보전 관리 포함). 두 카테고리의 핵심어를 구분해 두면 이 유형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다.

NoteBase